

#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 약정서

\_\_\_\_\_ 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(이하 "계약"이라 함)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## 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"갑"이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"을"의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의 업무내용)

본 계약에 의해 처리되는 가상계좌의 사용 용도 및 목적,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### 1. 가상계좌의 사용용도

-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단독 이용  
(Virtual Account Service Only)
- 매출 채권 관리시스템 (RMS-Receivables Management System) 서비스와 연계된 가상 계좌 자금관리 서비스
- SMS 서비스 (추가 서비스)

### 2. 가상계좌 사용 목적: ( )

### 3. 업무의 범위

- 계좌 개설 서비스: "을"이 "갑"의 요청에 의하여 "갑"이 사용할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"갑"에게 전송하는 업무
- 입금 및 통지 서비스: "갑"의 고객에게 부여한 "갑"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"갑"이 지정한 모계좌에 (이하 "입금 모계좌")에 입금하는 업무 및 입금명세의 전송 업무
- 조회 서비스: "갑"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거래 내역을 "갑"이 조회 가능하게 지원하는 업무 ("갑"은 가상계좌로 입금된 거래 내역을 HSBCnet (HSBC 글로벌 인터넷 뱅킹)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.)
- RMS (매출 채권 관리시스템) 서비스와 연계된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업무 ("갑"의 거래처별로 할당된 고유 가상계좌는, RMS (매출 채권 관리시스템)에서 고객의 미수금 거래내역과 입금 내역간의 대사작업을 위한 지급인 아이디(Payor ID)로 사용될 수 있다.)

## 제 3 조 (이용기관의 제한 및 의무)

-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의 이용기관은 기업 고객에 한한다.
-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이용기관이 전자 금융업자일 경우, "을"이 제공한 가상계좌를 타 업체에 할당하여 관리를 대행하거나 할 수 없다.
- "을"이 "갑"에게 발급한 상기의 가상계좌는 "갑"의 소유로서 "갑"의 고객인 지급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지급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"갑"은 반드시 상기 내용을 가상계좌 서비스 실행 전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"갑"의 고객인 지급인에게 안내하도록 한다.
- "갑"이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제 2 조 제 2 항에 명시한 집금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"을"은 "갑"에게 가상계좌 사용목적을 확인 요청 할 수 있다.

이 약관은 "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"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#### 제 4 조 (가상계좌의 신청)

- “갑”은 “을”이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, “갑”的 거래처에게 교부할 고유 가상계좌 좌수, 입금모계좌인 예금계좌 및 수수료 정산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청한다. 기 신청한 가상계좌수와 지정된 예금계좌들을 추가, 변경,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“갑”은 “을”에게서 부여 받은 일련의 가상계좌에 고객정보를 첨부하여 “을”에게 처리 의뢰할 수 있고, 해당 파일은 전자메일, 컴퓨터 디스크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, 매개물 또는 경로 등과 같이 전자적장치를 통해 전자문서로써 송부할 수 있다. 그러한 파일은 송부 전에 반드시 암호화 처리를 거쳐야만 하고, “갑”은 “갑”이 작성한 파일의 진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#### 제 5 조 (업무 처리 및 자금정산방법)

- 업무처리 시간은 “을”的 대고객 영업시간으로 한다. 다만 “을”的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할 경우에는 “갑”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- “갑”的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“갑”的 고객 예금 인출 또는 이체의 청구 절차 없이 “갑”이 본 계약서에 의해 지정한 모계좌로 바로 이체된다. 다만 “을”的 시스템 사정, 경영 정책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동 이체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“갑”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.
- 자기앞수표로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모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그 자기앞 수표가 추심완료 된 후에 출금가능하다.
- “을”이 수납한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별도의 예금청구절차 없이 “갑”的 해당 모계좌에서 출금하여 처리한다.

#### 제 6 조 (입금업무 처리의 예외)

“을”이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처리함에 있어 가상계좌 또는 모계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“갑”에게 전문 통보 후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.

- 가상계좌나 모계좌가 거래 중지계좌에 편입되거나 해지된 경우
- 가상계좌나 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경우

#### 제 7 조 (거래 내용의 확인)

- “갑”과 “을”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HSBCnet (HSBC 글로벌 인터넷 뱅킹시스템) 계좌 정보 혹은 계좌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하며, 별도의 거래명세를 작성, 교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HSBCnet 을 통하여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, 별도의 HSBCnet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)
-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의 확인사항 중 “을”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결과의 전송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하며, 전송내용과 실제 처리 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“갑”에게 별도 통지한다.

#### 제 8 조 (수수료)

- 가상계좌 거래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모계좌로 입금처리된 거래 건수에 의거하여 부과된다.
-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첫 영업일에 “갑”이 지정한 가상계좌 서비스 신청서상에 명시된 수수료정산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청구절차 없이 자동 인출된다.
- 상기 수수료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-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“을”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“갑”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“갑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. “갑”이 통지를 받은 후 그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 수수료 변경에 의하여 “갑”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“갑”은 변경 후 최초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다.

#### 제 9 조 (효력 및 계약기간)

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“을”이 “갑”에 대하여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인 [ ]년 [ ]월 [ ]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“갑”과 “을” 중 어느 한쪽이 30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. 그러나 본 계약의 해지 시에도 본질상 유효한 조항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완료될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, 각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된다.

이 약관은 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”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## 제 10 조 (계약해지)

1.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-1. 상호간에 서면 합의한 경우
  - 1-2. 계약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
  - 1-3. 계약상대방이 파산, 회생절차, 기업개선약정을 신청 또는 체결하거나,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관리인 등이 선임되는 등 신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
  - 1-4.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의 경영 정책상의 사유, 관련 법령의 제/개정, 금융감독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
  - 1-5. 가상계좌 발급 후, 1년 간 가상계좌 사용 내역이 없을 경우,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서면 통보후 해지할 수 있다.
  - 1-6. 기타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금융감독 기관이 정한 금융관계 법규 위반 등으로 신용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, 계약 상대방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
  - 1-7. “갑”이 제 2 조 제2항에 명시한 가상계좌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
2. 제 1-1 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, 제1-2항, 제1-3항, 제1-4항, 제1-5항, 제1-6항 및 제1-7항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해지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3. 제 2항의 경우에 “갑”은 미지급액을 포함한 총 잔여 수수료를 해지 전에 “을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4. 해지를 통지받은 “갑”은 “을”的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11 조 (전산운용)

제2조에 따른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전산운용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的 실무담당부서장이 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 제 12 조 (기밀유지)

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 제 13 조 (면책)

본 계약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“을”的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 따르기로 한다.

## 제 14 조 (신의성실 의무)
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
## 제 15 조 (준용사항)

1. 본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가상계좌 및 모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“을”的 예금업무관련 약관을 준용하며, “을”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타행환 공동망(CD공동망 및 전자금융공동망 포함)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.
2.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. 만약, 본 계약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경우,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먼저 적용한다.

## 제 16 조 (정보의 제공)

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지급인 이름, 지급인 ID 번호, 가상계좌 이름, 가상계좌번호 등(이하 “고객정보”)을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고객은 이에 동의한다.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업자는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정보를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, 제공하지 않으며,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다.

## 제 17 조 (관할법원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한다.

이 약관은 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”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 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년 월 일

(갑)

(을)

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
(인)

(인)